

제10장
예외

제10.1조
일반적 예외

제2장(상품 무역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
제10.2조
안보 예외

1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 - 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
 - 나.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 - 1) 무기,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
 - 2) 핵분열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
 - 3)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하거나 기능을 저하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, 또는

4) 국내적 비상시,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, 또는

다.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

2.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.

제10.3조

과세

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.

2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.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3.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 범위에서, 제2장(상품 무역)의 제2.14조(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)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에만 과세 조치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.

4. 이 조의 목적상

가. **조세협약**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

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.

나.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.5조(일반 정의)에 정의된 관세, 그리고 그 정의 중 나호, 다호, 라호 및 마호에 예외로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. 그리고

다.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1)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, 또는 그 승계인, 그리고
- 2) 필리핀의 경우, 재무부 국세청장, 또는 그 승계인

제10.4조

정보의 공개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
제10.5조

비밀유지

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,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